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 등〉
■ 조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00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2
2. 총괄적 검토	4
3. 주요 조문별 검토	8
가. 법률 제명 및 목적 규정	8
나. 정의 등	10
다. 조형물 등의 설치·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금지	12
라. 설치 및 사용 금지의 적용 배제	17
마. 과태료	19
바. 부칙	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국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4.
3. 회 부 일 : 2024. 10.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이들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나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인으로 처벌받은 자를 찬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의류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설치·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 및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전쟁범죄인의 조형물 등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설치 및 사용 등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으로, 본칙 7개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사람으로 하고, 전쟁범죄인을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전쟁범죄에 관하여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로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또는 휘장이나 이러한 문양이 포함된 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으로 정의함.

둘째, 누구든지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

하거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셋째, 역사의 재현을 위한 영화, 공연 또는 전시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일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전쟁범죄인의 조형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넷째, 법을 위반하여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기념관·전시관을 건립한 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정안의 체계】

구분	조문 내용		비고
본칙	제1조	목적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 위함
	제2조	정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조형물 등의 설치 금지	
	제5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금지	
	제6조	설치 및 사용금지의 적용 배제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4조 또는 제5조 적용 배제
	제7조	과태료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조형물, 기념관, 전시관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체, 폐쇄 등 의무 부여

2. 총괄적 검토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 및 기념비, 기념관이 여전히 전국에 산재해 있고,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일부에서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어 있어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

제정안은 이와 같은 지적을 감안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전쟁범죄인 등이 찬양 또는 선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 민족정기를 확립할 수 있다는 포괄적 당위성 차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다만, 제정안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조형물 설치금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금지 등이 적정하게 규정되었는지, 이 법 시행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조형물, 기념관, 전시관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체, 폐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

1) 시민단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용백 흉상 철거해야", 뉴스1, 2019. 11. 14.

분이 있다고 보임.

참고로, 국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26건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해외에서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가 전체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을 「형법」(독일), 「배지법」(오스트리아),²⁾ 「금지법」(오스트리아)³⁾에서 규정하고 있음.

<외국의 유사 입법례>

-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에 나치 등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또는 단체의 표식을 국내에서 유포하거나 제작·보관·수출·수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 (오스트리아) 「배지법(Abzeichengesetz)」에 오스트리아에서 금지된 단체의 배지, 유니폼 또는 그 일부분을 공개적으로 착용, 전시 또는 배포를 금지, 위반 시 **최고 4천 유로의 벌금 또는 최대 1개월의 구금**에 처하도록 규정

※ 자료: 행정안전부

2) 국회도서관 법률정보회답, 오스트리아 전체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 관련 입법례, 2024. 10. 30.

금지된 단체의 배지, 유니폼 또는 유니폼의 일부분은 공개적으로 착용, 전시, 제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됨. 배지에는 엠블럼, 기호 및 표시가 포함됨(제1조제1항). - 위반에 대하여 최대 1만 유로(약 1천 5백만 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1개월의 자유형에 처함. 재범의 경우 최대 2만 유로(약 3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6주의 자유형에 처함(제3조제1항).

3) 국회도서관 법률정보회답, 오스트리아 전체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 관련 입법례, 2024. 10. 30.

나치활동은 포괄적으로 금지됨. 즉, 공개적으로 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인쇄물, 유포된 글 또는 그림 표현을 통해 동법의 금지된 행위 중 하나를 장려하거나 옹호하거나 유도하려는 사람은 다른 조항에 따라 더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는 한 5년에서 10년의 자유형에 처함. 특히 위험한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함(제3d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등에 관한 조례>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1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5404호	2024.9.27.
2	전라남도 강진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2805호	2024.10.16.
3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제6855호	2021.1.4.
4	전라남도 고흥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3102호	2024.9.30.
5	전라남도 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2169호	2024.9.19.
6	광주광역시 남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1644호	2024.11.11.
7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1892호	2024.9.30.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2112호	2024.10.2.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2040호	2024.9.30.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1630호	2024.9.20.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1302호	2024.9.10.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7684호	2020.9.24.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1942호	2024.9.26.
14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7865호	2021.1.7.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1454호	2021.9.29.
16	경기도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4095호	2024.7.1.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	제2524호	2024.9.20.
18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2462호	2024.7.12.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19	전라남도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2726호	2024.8.8.
20	경기도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	제3649호	2024.7.10.
21	전라남도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2121호	2024.9.13.
2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2415호	2024.9.27.
23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7307호	2024.7.15.
24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6957호	2022.12.30.
25	경상남도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2043호	2024.11.15.
26	경기도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2249호	2023.11.23.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상징물’ 및 ‘공적’의 범위, 상징물 등의 설치·사용 목적의 판단 기준 등 법 적용의 범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 및 담당공무원에 과도한 판단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상징물 사용자는 주의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일반 국민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어,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주의 의무를 요구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법률 제명 및 목적 규정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이 법의 목적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정안의 제명 및 목적은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목적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안 제4조(조형물 등의 설치 금지) 및 제5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대상을 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죄인에 대해서는 조형물 등의 설치, 기념관·전시관 건립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해서는 상징물의 제작·유통·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

그러나, 목적규정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지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정의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사람을 말한다.
2. “전쟁범죄인”이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전쟁범죄에 관하여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로 선고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또는 휘장이나 이러한 문양이 포함된 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설치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사람으로, “전쟁범죄인”을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전쟁범죄에 관하여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유죄로 선고 받은 사람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또는 휘장이나 이러한 문양이 포함된 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

또한, 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의 설치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정의하여 관련된 조형물이나 상징물의 설치, 건립, 제작, 유통 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핵심 용어는 불필요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휘장, 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⁴⁾

또한, 제정안은 안 제4조(조형물 등의 설치 금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의 설치도 금지하고 있으나, 조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단지 ‘흉상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조형물의 범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형물에 대한 정의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봄.

4)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중략),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후략)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다. 조형물 등의 설치·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금지

제4조(조형물 등의 설치 금지) 누구든지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을 건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금지) ① 누구든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은 누구든지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을 건립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안 제3조), 누구든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안 제4조).

동 조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전쟁범죄인 등의 행위가 찬양 또는 선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 부칙 제2조(설치된 조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조형물, 기념관 등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체하거나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가

저울 수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조형물 해체, 기념관·전시관 폐쇄 등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안 제4조(조형물 등의 설치 금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전시관을 건립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 이들의 공적이라는 개념이 어떤 행위인지 판단하는 주체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⁵⁾ 공적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26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⁶⁾

다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범위에 일본 제국주의 정부기관, 민간

5) 일례로, 백선엽 장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특설대에 근무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으나,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를 지휘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6) 「강원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6조(공공사용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공공사용의 제한 또는 공공시설에서 퇴장을 명하거나 일제 상징물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 등의 포함 여부, 상징물의 객관적 인식 가능 여부 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주체나 관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대중은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 예측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자는 주의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일반 국민까지 포함될 수 있어 과도한 주의의무를 요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례와 달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사용금지 이외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전쟁범죄자의 조형물 등의 사용 금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조형물 등의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도 추가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표시가 되어 있는 깃발·나치의 하켄크로이츠 표시, 히틀러식 인사법 등을 금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배지법」에서 금지된 단체의 배지, 유니폼 또는 유니폼의 일부분을 공개적으로 착용, 전시, 제시,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독일 「형법」 >

원문	번역문
§ 86 Verbreiten von Propagandamitteln verfassungswidriger und terroristischer Organisationen (1) Wer Propagandamittel 1. einer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Partei oder einer Partei oder Vereinigung, von der unanfechtbar festgestellt ist, daß sie Ersatzorganisation einer solchen Partei ist, 2. einer Vereinigung, die unanfechtbar verboten ist, weil sie sich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gegen den Gedanken der Völkerverständigung richtet, oder von der unanfechtbar festgestellt ist, daß sie Ersatzorganisation einer solchen verbotenen Vereinigung ist, 3. einer Regierung, Vereinigung oder Einrichtung außerhalb des räumlichen Geltungsbereichs dieses Gesetzes, die für die Zwecke einer der in den Nummern 1 und 2 bezeichneten Parteien oder Vereinigungen tätig ist, oder 4. die nach ihrem Inhalt dazu bestimmt sind, Bestrebungen einer ehemaligen nationalsozialistischen Organisation fortzusetzen, im Inland verbreitet oder der Öffentlichkeit zugänglich macht oder zur Verbreitung im Inland oder Ausland herstellt, vorrätig hält, einführt oder ausfüh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제86조 위헌 및 테러 조직의 선전물 유포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전물, 즉 1.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 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의 선전물 2. 헌법질서 또는 국제적 이해와 합의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이유로 금지된 단체 또는 그와 같은 금지된 단체의 대체 조직임이 확정된 단체의 선전물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정당이나 단체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동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외의 정부, 단체 또는 기관의 선전물 4. 과거 국가사회주의(나치) 조직의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전물을 국내에 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공연히 전자기록을 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자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회답(독일의 전체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 관련 입법례)

<오스트리아 「배지법」 (Abzeichengesetz 1960)>

원문	번역문
§ 1. (1) Abzeichen, Uniformen oder Uniformteile einer in Österreich verbotenen Organisation dürfen öffentlich weder getragen noch zur Schau gestellt, dargestellt oder verbreitet werden. Als Abzeichen sind auch Embleme, Symbole und Kennzeichen anzusehen. (2) Das Verbot des Abs. 1 erstreckt sich auch auf Abzeichen, Uniformen und Uniformteile, die auf Grund ihrer Ähnlichkeit oder ihrer offenkundigen Zweckbestimmung als Ersatz eines der in Abs. 1 erwähnten Abzeichen, Uniformen oder Uniformteile gebraucht werden. (3) Orden und Ehrenzeichen, die eines der im Abs. 1 oder Abs. 2 erwähnten Embleme aufweisen, dürfen öffentlich weder getragen noch zur Schau gestellt werden.	제1조. (1) 오스트리아에서 금지된 단체의 배지, 유니폼 또는 유니폼의 일부분은 공개적으로 착용, 전시, 제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된다. 배지에는 엠블럼, 기호 및 표시가 포함된다. (2) 제1항의 금지는 제1항에 언급된 배지, 또는 유니폼 또는 유니폼의 일부분 중 하나의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배지, 유니폼 및 유니폼의 일부분에도 적용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언급된 엠블럼 중 하나를 지닌 주문 및 장식품은 공개적으로 착용하거나 전시되어서는 안 된다.

※ 자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회답(오스트리아 전체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 관련 입법례)

라. 설치 및 사용 금지의 적용 배제

제6조(설치 및 사용 금지의 적용 배제)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전쟁범죄인의 조형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전쟁범죄인의 조형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도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되 이와 같은 금지행위가 시민 교육, 위헌 시도에 대한 방어, 예술 또는 과학, 연구 또는 교육, 시사나 역사에 대한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독일 「형법」 >

원문	번역문
§ 86 Verbreiten von Propagandamitteln verfassungswidriger und terroristischer Organisationen (4) Die Absätze 1 und 2 gelten nicht, wenn die Handlung der staatsbürgerlichen Aufklärung, der Abwehr verfassungswidriger Bestrebungen, der Kunst oder der Wissenschaft, der Forschung oder der Lehre, der Berichterstattung über Vorgänge des Zeitgeschehens oder der Geschichte oder ähnlichen Zwecken dient.	제86조 위헌 및 테러 조직의 선전물 유포 (4) 해당 행위가 시민 교육, 위헌 시도에 대한 방어, 예술 또는 과학, 연구 또는 교육, 시사나 역사에 대한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자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회답(독일의 전체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 관련 입법례)

다만, 제정안은 예외적인 사용목적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 등의 판단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법집행의 지속가능성 및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하여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기념관·전시관을 건립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기념관·전시관을 건립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안 제7조제1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안 제7조제2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제3항).

제정안은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과태료는 금전적 제재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행강제금과 달리 일회적 과태료 부과 이후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닐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입법 목적의 실효적인 달성을 위하여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단을 형벌로 강화하도록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제정안의 내용과 유사하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제작·사용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문진석의원 및 문금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심사경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22대 국회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

구분	발의자 (발의일)	주요 내용		
		상징물 의미	행위	처벌
「형법」	문진석 의원 (‘24.6.21.)	•욱일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누구나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가 포함된 옷, 물건, 도화, 휘장, 영상, 마스코트 등	•국내 제작·유통·유포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착용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제작·사용·착용 또는 게시하는 경우
	문금주 의원 (‘24.7.2.)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그 문양	•제작·유포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단독)주택의 외부 또는 공용공간에서 사용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교육, 학술, 보도,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김용만 의원 (‘24.6.27.)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참고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 오스트리아도 나치의 상징물(하켄크로이츠) 등을 사용하는 경우 형벌을 통해 제재하고 있음.

<독일 「형법」>

원문	번역문
§ 86a Verwenden von Kennzeichen verfassungswidriger und terroristischer Organisationen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im Inland Kennzeichen einer der in § 86 Abs. 1 Nr. 1, 2 und 4 oder Absatz 2 bezeichneten Parteien oder Vereinigungen verbreitet oder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in einem von ihm verbreiteten Inhalt (§ 11 Absatz 3) verwendet oder 2. einen Inhalt (§ 11 Absatz 3), der ein derartiges Kennzeichen darstellt oder enthält, zur Verbreitung oder Verwendung im Inland oder Ausland in der in Nummer 1 bezeichneten Art und Weise herstellt, vorrätig hält, einführt oder ausführt.	제86a조 위헌 및 테러 조직의 상징 사용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2항(제11조제3항)에 규정된 정당이나 단체가 배포하는 콘텐츠를 국내에 유포하거나, 집회에서 또는 행위자에 의하여 유포된 문서에서 이를 공연히 사용한 자 2. 제1호에 명시된 방식으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배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표시를 표현하거나 포함하는 콘텐츠(제11조제3항)를 생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한 자

※ 자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회답(독일의 전체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 관련 입법례)

<오스트리아 「배지법」 (Abzeichengesetz 1960)>

원문	번역문
§ 3. (1) Wer einem Verbot des § 1 zuwiderhandelt, begeht eine Verwaltungsübertretung und ist von der Bezirksverwaltungsbehörde, im Gebiet einer Gemeinde, für das die Landespolizeidirektion zugleich Sicherheitsbehörde erster Instanz ist, von der Landespolizeidirektion, mit Geldstrafe bis zu 10 000 Euro oder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Monat zu bestrafen. Wer bereits einmal rechtskräftig nach dieser Bestimmung bestraft wurde, ist mit Geldstrafe bis zu 20 000 Euro oder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Wochen zu bestrafen. Überwiegen erschwerende Umstände, so können Geld- und Freiheitsstrafen auch nebeneinander verhängt werden.	제3조. (1) 제1조의 금지를 위반하고 행정위반사항을 저지른 자는, 그 위반이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지역 행정관청으로부터의 금지 위반이고, 주(州) 경찰청장이 동시에 보안관청 1심급인 경우에는, 주(州) 경찰청장으로부터 최고 1만 유로의 벌금형 또는 최대 1개월의 자유형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최대 2만 유로의 벌금형 또는 최대 6주의 자유형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해진 경우, 벌금형과 자유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 자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회답(오스트리아 전체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 관련 입법례)

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된 조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전쟁범죄인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을 건립한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형물 또는 기념관·전시관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체하거나 폐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하고(안 부칙 제1조), 이 법 시행 전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건립한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형물이나 기념관 등을 해체하거나 폐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제2조).

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구체적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령의 제정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바, 제정법률 공포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봄.

제정안 부칙 제2조의 설치된 조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조형물, 기념관 등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체하거나 폐쇄하도록 하는 등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가져오므로, 조형물

해체, 기념관·전시관 폐쇄 시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 및 안 제4조(조형물 등의 설치 금지)와 병합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과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 이행 시 과태료 면제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43